

전문위원 강석재 입니다.

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해온 2003년도
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먼저,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.
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기획관리실, 총무국,
사회산업국, 보건소, 읍·면·동 및 출장소와
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

7월 7일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 청취와
경영수익사업장 현지확인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며,

7월 8일부터 9일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
공설운동장 두 곳에 대한 현지확인 후
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.

또한,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회산업국 소관
업무보고 청취 및 환경관리센터 등 다섯 곳에 대한
현지확인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,
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

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2일에는
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
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

한편,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
사회산업국, 건설국, 농업기술센터 및 읍·면·동으로 하여

7월 7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
임진강 골재 채취장 등 네 곳과 교하읍과 파주읍
재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며,
7월 8일에는 질의답변을 실시하고

7월 9일에는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
교하~조리 도로 확·포장공사장 등 여섯 곳과
파평면 재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며,
7월 10일에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또한, 7월 1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
소형분화생산 저면관수 시설 등 네 곳과 월릉면, 군내면의
재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
7월 12일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
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
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먼저,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.

다음,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증인체택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먼저,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 실·국과 보건소 등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증인체택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출석대상은 기획관리실장 등 총 45명입니다.

또한,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정에서는 실·과·소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등에 있어 중복 또는 경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.

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